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안
의견조회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-661호(2018.10.23.)

2.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08호, 2018.9.27.)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, 2018.10.25.(목) 11:00시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(E-mail :ksj@kha.or.kr, Fax : 02-705-9259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내용 (2018.11.1. 시행예정)

- ESD(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) 급여기준제한해소(11.1일 시행)로 전액본인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동 사항 반영하여 의료인 면허번호 기재방법 문구 수정
- MRI(자기공명영상진단)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관련 청구방법(필름 판독일자 기재) 개정(별표 8)
-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(V352), 산정특례 예외기준(V100) 코드 신설(별표6) 및 관련 설명란 개정(별표8)

붙임 : 공고 제2018-661호 개정안, 공고문 각 1부.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-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사원 김선주 팀장 정윤학 국장 장은혜 본부장 김종윤

시 행 : 보험 제 2018-652 (2018.10.23)

우편번호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~14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
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5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ksj@kha.or.kr